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지난 4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최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노기영 한림대 교수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방송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현행 방송법상, 사업자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지던 지상파 재송신이 최근 들어 갈등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국민의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시청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하며 방송정책은 사업자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방통위는 올해 초까지 재송신 제도 개선 전담반을 통해 의무재송신 채널(현행 KBS1과 EBS)에 KBS2를 포함하는 A안과, 한시적으로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정하는 B안을 내놓았다. 노기영 교수는 공익성을 강화하는 목적이라면 A안이,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B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안은 분쟁발생시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B안은 일시적이고 응급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 외에도 재송신 대가 정산기준의 확립, 분쟁조정 절차의 개선,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승인제 폐지를 제안했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은 의무재송신되어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방송사업자 간 갈등에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는 공해보다 더 유해하다며, 의무재송신의 확대범위와 관련, 공영방송만 시행하고 민영방송(SBS·MBC)은 합리적인 대가 정산방식을 제공하여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사의 저작권이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공공재 성격의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송신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은 강제징수와 동일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상파 재송신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적극 중재에 나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 저작권 보호 필요

한편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케이블법 제정을 통해 지역 지상파에게 동시 중계방송권과 같은 재산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면,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했다.

임상혁 변호사 역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려면 저작권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며, 특히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방통위)가 저작물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방통위, 중재권 미약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재 시청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방통위의 개입이 어려움을 괴롭혔다. 김 과장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송신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SBS와 SkyLife의 재송신 갈등으로 인한 SBS의 HD신호 송출 중단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청자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오는 6월 8일 예정된 재송신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AA 이명진 soziro01@caa.or.kr